

-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 -  
**검 토 보 고**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창섭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1292호

다. 제출일자 : 2016. 6. 28

라. 회부일자 : 2016. 6. 30

## 2. 주 문

- 세그웨이로 대표되는 “개인형 이동수단”의 경우 현행법상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로 분류되어 차도로 통행, 관련 면허 및 헬멧을 착용은 물론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이 없어 이용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“개인형 이동수단”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가 아닌 별도의 이용수단으로 정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

## 3. 제안이유

- 현재 도시내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“세그웨이”로 대표되는 “개인형 이동수단”(personal mobility)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준이 미흡하여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

- “개인형 이동수단”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로 분류되어 속도차가 많이 나는 차도를 이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면허소지 및 헬멧 착용을 해야 이용할 수 있고 사고가 날 경우에도 관련 보험이 없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등 사용여건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

따라서, 도로교통법상 “개인형 이동수단”을 별도 정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교통수단을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 “개인형 이동수단”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 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함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
나. 기타사항: 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) : 원안 동의

#### 5. 이 송 처

가. 국 회 : 국회의장

나. 정 부 : 국무총리, 행정자치부 장관, 경찰청장

## 6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### 가. 개 요

- 동 건의안은 현재 법률상 세그웨이로 대표되는 “개인형 이동수단”(personal mobility)의 경우 현행법상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로 분류되어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개선하고자 “개인형 이동교통수단”을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가 아닌 별도의 이용수단으로 구분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최근 세그웨이 및 투휠보드와 같은 전동휠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휴대 편리성과 가격의 대중화에 힘입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앞으로도 기술발전에 따른 가격 인하, 친환경 교통 정책 및 1인 가구 증가를 감안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

※ 참고 : 국내 2015년 전동휠 판매량 증가율<sup>1)</sup> (단위 :%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
국내시장	-	-	-	5.3	7.2	4.8	6.2	7.6	22.0	21.1	25.8

- 하지만, 국내의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이 모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『도로교통법』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‘원동기장치자전거’로 분류<sup>2)</sup>함에 따라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, 차도로만 이용해야 하는 상황임<sup>3)</sup>

1) “드론&전동휠 아웃도어 키덜트 제품이 뜬다“, 세계일보(2015.11.30.).

2) 제2조(정의) 19.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.

나. 배기량 50cc 미만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.59킬로와트 미만)의 원동기를 단 차

또한, ‘원동기장치자전거’는 『도로교통법』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1·2종 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, 『도로교통법』 제83에 따르면 “만16세 미만 청소년”은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초·중 등학생들의 개인용 이동수단 운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는 등<sup>4)</sup> 현행 법률 체계가 개인용 이동수단의 실제사용 여건과 맞지 않는 상황임

- 한편 2015년 기준 전동휠 관련 사고 건수는 총 26건으로 전년도 2건에 비해 무려 13배나 증가하였으나 파악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개인용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관광지 전동휠 대여점 23곳 중 19곳(82.6%)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남<sup>5)</sup>
- 따라서, 동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가 아닌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구분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기술발달에 따른 도입된 새로운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
- 한편 서울시장은 동 건의안에 대해 개인이동교통수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도록 관련법에 조속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<sup>6)</sup>

3) 제13조(차마의 통행)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. “차마”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.

가. “차”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) 자동차 2) 건설기계 3) 원동기장치자전거 4) 자전거 5) 생략

4) 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.

1. 18세 미만(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)인 사람

5) 지우석, 『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, 제도적 대응은 미흡』 (경기개발연구원, 2016.5.18.)

6) 택시물류과-25676(2015.8.31.)